

「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」

## 제 안 설 명

- 의안번호 제974호 「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」 관련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  
- 본 동의안은
  -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” 제15조의10에 따른 「서울광역자활센터」 운영사무와 관련, 최초 위탁 후 6년이 경과하였기에 “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” 제4조의3 제2항에 근거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
  - 주요내용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·창업 지원 및 알선,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, 자활기업 창업지원 및 기술·경영 지도와 그 밖의 자활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.
  -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 경험과 자활사업의 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  
-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